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의계약시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을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에서 추정가격 2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용역계약시 하자 발생을 부정당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 방식에 따라 부정당제재 정도를 차등화하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의 일반관리비율 상한을 100분의 6에서 100분의 8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6”을 “8”로 한다.

제33조제3항제2호 중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제2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란 나목 중 “물품”을 “물품·용역”으로 하고, 같은 란(종전의 제3호) 제3호(종전의 제3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제3호(종전의 제3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란 1)부터 제3호(종전의 제3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란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3호(종전의 제3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란 나목 및 제3호(종전의 제3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사

- 1)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
- 2)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3) 1)과 2)의 부당 또는 부정한 시공과 관련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나. 물품

- 1) 규격서와 달리 물품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제품을 제조·납품 한 자
- 2) 규격서 등에서 정한 기준(치수, 재질, 형태, 시험기준 등)보다 낮은 자재를 쓰거나 제조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제품을 제조·납품 한 자
- 3) 1)과 2)의 부당 또는 부정한 이행과 관련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다. 용역

- 1)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서 등)와 달리 보안·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안·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하게 용역을 수행한 자
- 2)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서 등)에서 정한 기준(시험기준, 투입공수 등)보다 낮은 자재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당하게 용역을 수행한 자
- 3) 1)과 2)의 부당 또는 부정한 이행과 관련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별표 2 제2호제3호(중전의 제3호) 제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1년
6개월
3개월
1년
6개월
3개월
1년
6개월
3개월

별표 2 제2호제13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란 2) 중 “않은 자”를 “않은 자로서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발주자가 동의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 조치를 한 경우”로 하고, 같은 란에 제13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란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하지 않은 자로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여 공동수급
체에서 탈퇴한 경우

별표 2 제2호제13호 제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개월
3개월
2개월
1개월
3개월
1개월

별표 3 제2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나목 중 “물품”을 “물품·용역”으로 하
고, 같은 란(종전의 제3호) 제3호(종전의 제3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가목
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제3호(종전의 제3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1)부터 제3호(종전의 제3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3호(종전의 제3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나목 및
제3호(종전의 제3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사

1)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

2)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3) 1)과 2)의 부당 또는 부정한 시공과 관련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나. 물품

1) 규격서와 달리 물품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제품을 제조·납품 한 자

2) 규격서 등에서 정한 기준(치수, 재질, 형태, 시험기준 등)보다 낮은 자재를 쓰거나 제조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제품을 제조·납품 한 자

3) 1)과 2)의 부당 또는 부정한 이행과 관련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다. 용역

1)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서 등)와 달리 보안·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안·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하게 용역을 수행한 자

2)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서 등)에서 정한 기준(시험기준, 투입공수 등)보다 낮은 자재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당하게 용역을 수행한 자

3) 1)과 2)의 부당 또는 부정한 이행과 관련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

하계 수행하지 않은 자

별표 3 제3호(중전의 제3호) 과징금 부과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3%	
1.5%	
5%	
3%	
1.5%	
5%	
3%	
1.5%	

별표 3 제6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2) 중 “않은 자”를 “않은 자로서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발주자가 동의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

되 조치를 한 경우”로 하고, 같은 란에 제6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로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경우

별표 3 제6호 과징금 부과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1.5%
1%
0.5%
1.5%
0.5%

별표 4 제2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나목 중 “물품”을 “물품·용역”으로 하고, 같은 란(종전의 제3호) 제3호(종전의 제3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에 제3호(종전의 제3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1)부터 제3호(종전의 제3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 제3호(종전의 제3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나목 및

제3호(중전의 제3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사

- 1)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자
- 2)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 3) 1)과 2)의 부당 또는 부정한 시공과 관련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나. 물품

- 1) 규격서와 달리 물품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제품을 제조·납품 한 자
- 2) 규격서 등에서 정한 기준(치수, 재질, 형태, 시험기준 등)보다 낮은 자재를 쓰거나 제조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정한 제품을 제조·납품 한 자
- 3) 1)과 2)의 부당 또는 부정한 이행과 관련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다. 용역

- 1)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서 등)와 달리 보안·안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안·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하게 용역을 수행한 자
- 2) 과업지시서(또는 제안서 등)에서 정한 기준(시험기준, 투입공

수 등)보다 낮은 자재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정하게 용역을 수행한 자

3) 1)과 2)의 부당 또는 부정한 이행과 관련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

별표 4 제3호(종전의 제3호) 과징금 부과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5%
9%
4.5%
15%
9%
4.5%
15%
9%

4.5%	
------	--

별표 4 제13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2) 중 “않은 자”를 “않은 자로서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발주자가 동의하여 공동수급체에서
탈퇴 조치를 한 경우”로 하고, 같은 란에 제13호 과징금 부과사유란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시공에는 참여하였으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하지 않은 자로서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여 공동수급
체에서 탈퇴한 경우

별표 4 제13호 과징금 부과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4.5%	
3.0%	
1.5%	
4.5%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 ----- -----.
1. 공사 : 100분의 <u>6</u>	1. ----- <u>8</u>
2. ~ 17. (생략)	2. ~ 1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② (생략)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3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u>100만원</u>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	2. ----- <u>200만원</u> ----- ----- -----